

1. 개정이유

최근 대형화재 발생으로 많은 인명·재산피해가 발생한 공장 및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규정을 개선하고,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중 “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”과 “시·도 소속 소방공무원”이 당연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장 화재의 특성상 화재 확산이 빠르고 초기 진압이 어려워, 바닥면적 합계 5,000㎡(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2,500㎡) 이상은 화재 초기에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(안 별표4)
- 나. 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300㎡ 미만 숙박시설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(안 별표4)
- 다. 중앙(지방)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 본문에 규정하던 과장급 직위 이상 및 해당 시·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각 호에서 규정하여 당연직이 아닌 선임할 수 있는 대상 중 하나로 규정 명확화(안 제22조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6. 3. 00. ~ 4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3) 행정규제 :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”을
“다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
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

제22조제2항 중 “해당 시·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제1항”을 “다음”으로 하고,
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해당 시·도 소속 소방공무원

2.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별표 4 제1호라목6) 및 같은 목 10)나) 중 “창고시설”을 각각 “공장 또는
창고시설”로 하고, 같은 호 마목6) 중 “300㎡ 이상 600㎡”를 “600㎡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4 개정 규정은 3개월 경과 후
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위원의 임명·위촉)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<u>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</u> <u><신 설></u> 1. ~ 5. (생 략)	제22조(위원의 임명·위촉) ① -- ----- <u>다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<u>해당 시·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② ----- <u>다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·④ (생 략)	1. <u>해당 시·도 소속 소방공무원</u> 2. <u>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u> ③·④ (현행과 같음)

[별표 4]

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·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(제11조 관련)

현행	개정안
1. 소화설비 가 ~ 다. (생략) 라.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(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)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) ~ 5) (생략) 6) <u>창고시설</u>(물류터미널을 제외한다)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㎡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7) ~ 9) (생략) 10)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) (생략) 나) <u>창고시설</u>(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) 중 6)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㎡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다) ~ 마) (생략) 11) ~ 14) (생략) 마.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	1. 소화설비 가 ~ 다. (현행과 같음) 라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) ~ 5) (현행과 같음) 6) <u>공장 또는 창고시설</u>----- ----- -----. 7) ~ 9) (현행과 같음) 10)----- ----- ----- ----- 가) (현행과 같음) 나) <u>공장 또는 창고시설</u>----- ----- ----- ----- 다) ~ 마) (현행과 같음) 11) ~ 14) (현행과 같음) 마.-----

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) ~ 5) (생 략) 6) 숙박시설로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<u>300m² 이상 600m²</u> 미만인 시설 7) ~ 8) (생 략) 바 ~ 사. (생 략) 2. ~ 5. (생 략)	----- -----. 1) ~ 5) (현행과 같음) 6) ----- -----<u>600m²</u> 미만인 시설 7) ~ 8) (현행과 같음) 바 ~ 사. (현행과 같음) 2. ~ 5. (현행과 같음)
---	---